

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6816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77호, 2020. 6. 9. 공포, 2020. 6.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신청내용	신청사항			
	☐ 신규지정 신청 ☐ 자격 확인을 위한 재신청			
	신청사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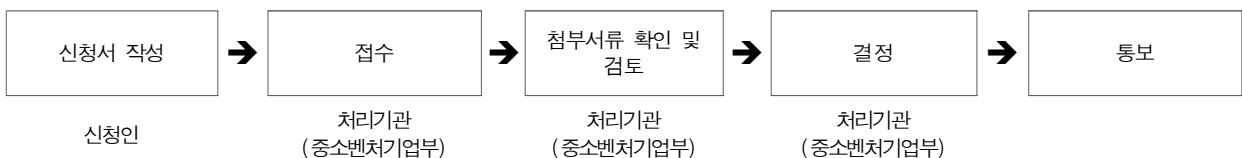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질 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조의2(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 기관 지정신청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 호서식을 말한다.</u>